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2023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

# 목 차

---

## CONTENTS

### I. 시민옴부즈만 운영개요

-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07
- 2.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 09
- 3. 시민옴부즈만 기능 및 권한 ..... 11
- 4. 고충민원 처리절차 ..... 13

### II. 시민옴부즈만 운영성과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 17
- 2. 시민옴부즈만 활동 ..... 26
- 3. 시민옴부즈만 홍보 ..... 31

### III. 주요 처리사례

- 1. 의견표명 ..... 39
- 2. 기각 ..... 61

### IV. 부록

- 1.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 75
- 2.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81



# **I . 시민옴부즈만 운영개요**

-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2.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 3. 시민옴부즈만 기능 및 권한**
- 4. 고충민원 처리절차**



#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

- 이 단어의 기원은 고대 스웨덴어에서 유래한 말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대표자변호인·후견인’이라는 뜻으로,
- 현재는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의미

## 가 도입배경

-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핀란드·프랑스·영국·호주 등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고충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해 1994년 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의 자율적·자주적 해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를 통해 옴부즈만의 제도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여수시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에 이바지하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2016년 12월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 2017년 8월부터 2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나 운영근거

---

- 「지방자치법」 제116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다 추진경과

---

- 2016. 10. 05.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 2016. 12. 30.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7. 04. 07.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7. 08. 01. 제1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 2018. 02. 13. 2017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19. 02. 12.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19. 08. 01. 제2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 2020. 02. 25. 2019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1. 02. 26. 2020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1. 08. 10.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 2021. 08. 10.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 2021. 09. 15. 제3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 2022. 02. 15. 2021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3. 02. 15. 2022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 가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 구성·신분 : 2명 / 위촉직(민간인)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근무형태 : 주 4일 근무
- 운영방식 : 옴부즈만 독립적 직무수행
- 주요임무
  -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 발견 시 해당기관 감사 의뢰
  -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 실태 확인·점검 등

### 나 시민옴부즈만 관할

- 여수시 및 그 소속기관 등
- 여수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 여수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기관

#### 민원처리 예외 대상(시행규칙 제7조)

-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른 화해·일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소개

### 제3기

2021.9.15.

~

2023.9.14.



김기채 | 대표 시민옴부즈만

- 前) 여수시 건설교통국장



김양곤 | 시민옴부즈만

- 前) 여수시 문화관광해설사(역사문화)

### 제2기

2019.8.1.

~

2021.7.31.



임채성 | 대표 시민옴부즈만

- 前) 여수시 해양관광수산국장



장애신 | 시민옴부즈만

- 前) 교육지원청 교육장(여수, 곡성)

### 제1기

2017.8.1.

~

2019.7.31.



최봉춘 | 대표 시민옴부즈만

- 前) 여수시 국장(기획관광, 경영기획)



곽종철 | 시민옴부즈만

- 前) 여수농협 지점장

### 시민옴부즈만의 자격(부패방지권익위법 제33조)

- 대학 또는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 5년 이상 경력자
- 사회적 신망과 행정 식견 및 경험자로서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 3 시민옴부즈만 기능 및 권한

### 가 주요기능

#### □ 행정통제 기능

- 옴부즈만은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기능

- 현대사회가 복잡·다양화 되면서 시민과 공공행정기관 간, 이해관계 집단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송 등 전통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는 한계
- 옴부즈만은 행정과 시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사법구제 제도의 한계로 인해 양자 간 해결할 수 없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기체로서의 역할을 수행
- 또한, 비용의 부담 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기능 수행

#### □ 행정개혁 기능

- 행정의 속성상 한번 결정되면 그 결정 내용을 선례로 삼아 이를 계속 지속하려는 관성을 깨뜨려 위법·부당한 행정관행을 개선하도록 자극
- 특별한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옴부즈만 특성인 ‘부드러운 법률(soft law)’의 적용을 통해 행정의 변화 도모

#### □ 민주적·정치적 대변(代辯) 기능

- 계층·부문·지역·집단 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 소수집단, 소외 및 취약계층의 권익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옴부즈만은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

## 나 시민옴부즈만 직무 및 권한

- 시민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 여수시장 및 여수시의회가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 옴부즈만 조치(결정) 유형 |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은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의** :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 **기각**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각하 또는 이첩** : 각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이첩하는 경우

## 4 고충민원 처리절차

### 고충민원 신청

- 방문, 전화 등 접수
- 민원 상담 및 분류(처리기한 60일 이내)



### 운영회의

- 조사여부 결정(각하 등 해당 여부 판단)
- 담당 옴부즈만 지정



### 조사개시 통보

- 민원인 조사개시 통보
- 해당부서 고충민원 통보 및 자료 요구



### 조사 실시

- 민원 자료 검토 및 현장 조사
- 해당부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조사결과 보고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심의·의결

- 결과보고에 따른 심의·의결 또는 운영회의 심의·의결



### 조사결과 통지

- 해당부서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 통보
- 민원인에게 조사결과 통지(3일 이내)



### 결과 회신

- 옴부즈만 권고사항 조치계획 및 이행결과 회신(30일 이내)



## **II. 시민옴부즈만 운영성과**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 2. 시민옴부즈만 활동**
- 3. 시민옴부즈만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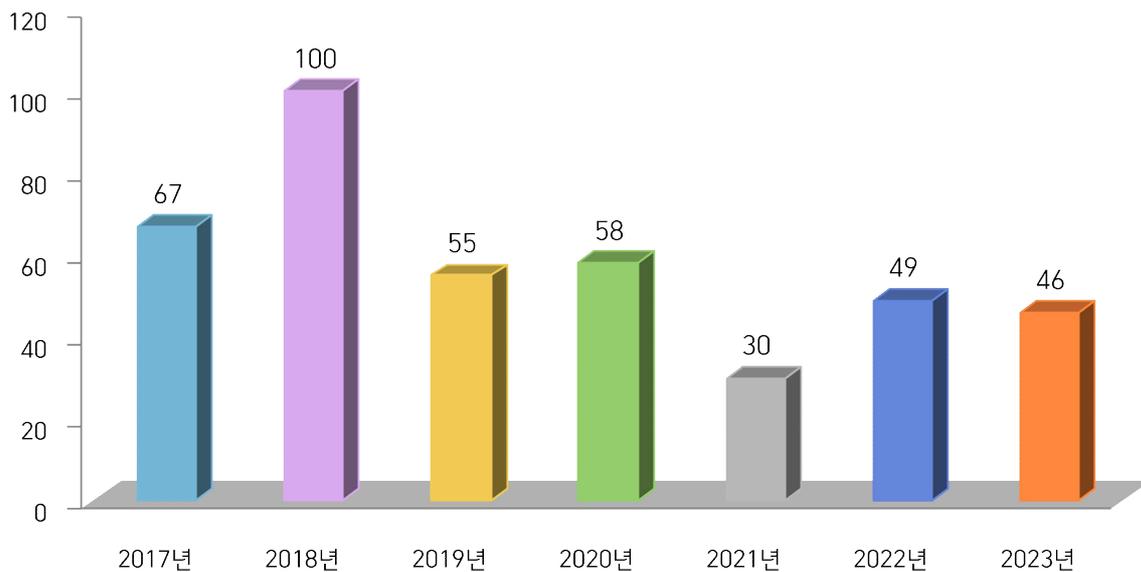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 가 총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2017년 8월 1일 출범 이후 2023년 12월 31일에 이르기까지 총 405건의 민원을 조사·처리함.

[2017년~2023년 시민옴부즈만 연도별 처리결과 현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05	67	100	55	58	30	49	46



이 중 옴부즈만 직접조사 민원은 126건으로 시정권고 27건, 의견표명 30건, 합의 3건, 심의안내 6건, 기각 48건, 각하 12건이며, 종결처리 민원은 279건으로 이첩 56건, 취하 11건, 상담완료 212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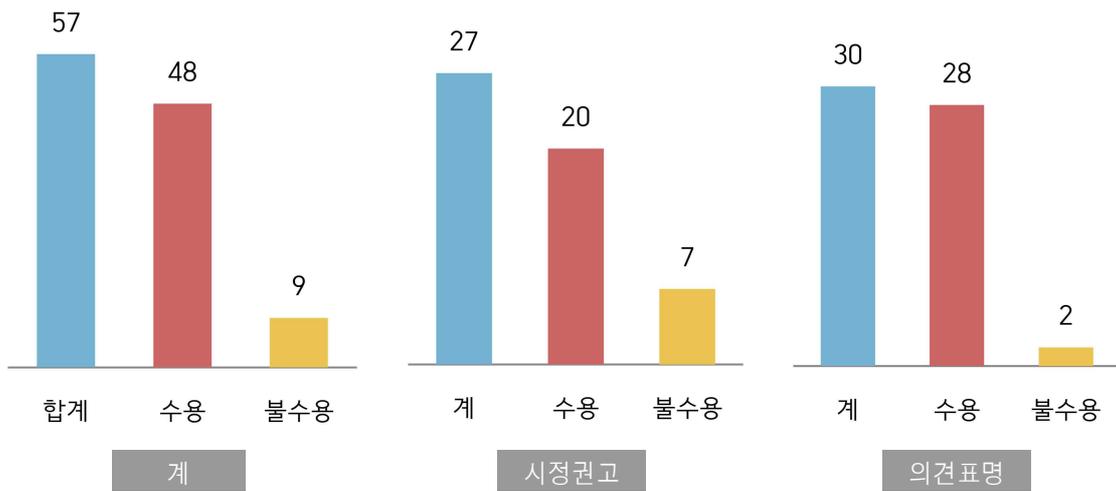
[2017년~2023년 시민옴부즈만 민원 처리결과 현황]

계	직접 조사(126건)							종결처리(279건)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심의안내	기각	각하	추진중	이첩	취하	상담완료
405	27	30	3	6	48	12	-	56	11	212

시민옴부즈만에서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한 민원은 총 57건으로, 이 중 피신청인이 수용한 민원은 48건임.

[2017년~2023년 시민옴부즈만 처리결과 수용 현황]

결정사항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계	57	27	30
수용	48	20	28
불수용	9	7	2



옴부즈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총 수용률은 84%로, 시정권고 민원은 27건 중 20건이 수용되어 74%의 수용률을, 의견표명 민원은 30건 중 전체 28건 수용되어 93%의 수용률을 기록함.

## 나 2023년 민원처리 내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2023년 한 해 동안 직접조사 민원 10건과 종결처리 민원 36건을 합하여 총 46건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함.

### [2023년 시민옴부즈만 민원 처리결과 현황]

계	직접조사(10건)						종결처리(36건)		
	시정권고	의견표명	심의안내	기각	각하	추진중	이첩	취하	상담완료
46	-	6	-	4	-	-	1	-	35

### □ 시민옴부즈만 직접조사 처리 내역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1	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요양원 건립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요양원 건립 허가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 요양원 앞 거주자는 요양원 앞 거주가 불가능 하니, 요양원 건축 허가를 취소해 주든지, 본인 집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li> <li>⇒ 건축주와 민원인과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10여 차례 만남을 가졌음. 금전적인 부분은 당사자 간에 서로 최종 합의하기로 하였으며, 주민 교통 안전대책과 환경문제 관리감독을 강화 하도록 의견표명(관계부서 수용)</li> </ul> </li> </ul>	완료 (의견표명)
2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거부 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직접지불금 신청하였으나 도시 거주 및 주업기준 미충족으로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등록이 거부됨</li> <li>- 임업 직불제법에 따라 임야소재지에 주소를 옮겨 산림경영을 계속하고 있으니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 요망</li> <li>⇒ 임산물 판매금액 미발생으로 면적직불금 지급요건 부적합,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준 미충족으로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등록 거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li> </ul> </li> </ul>	완료 (기각)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3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 농어촌도로 확장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농어촌도로(농도302)확장 실시설계 관련 인근토지와 같이 균등편입 요구</li> <li>⇒ 현지여건, 경제성, 신청인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도로선형을 결정하고 도로폭은 8m로 할 것과 민원인에게 사업계획의 세부일정을 안내해 줄 것을 의견표명함.(관계부서 수용)</li> </ul> </li> </ul>	완료 (의견표명)
4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하수처리장 일부 사유지 원상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곳의 일부 토지가 신청인의 토지이니 시설물을 철거해 주든지, 시의 잘못으로 신청인의 토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으니 신청인 토지 인접 마을소유 토지를 일부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li> <li>⇒ 민원인의 토지에 하수처리장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설 하기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 관계부서에 사유지 원상복구 또는 민원인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을 의견표명함.(관계부서 일부수용 의견으로 민원인 토지 수용 요구 시 매입토록 하겠음)</li> </ul> </li> </ul>	완료 (의견표명)
5	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재조사 후 도로로 변경한 대지 원상복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대지를 지적재조사 후 도로로 변경한 것은 잘못되었으니 다시 대지로 변경 요청</li> <li>⇒ 경계결정 통지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 후 경계확정된 사항으로 경계결정 취소 불가 판단</li> </ul> </li> </ul>	완료 (기각)
6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동항 내 주차장 부지 추가 점사용허가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동항 내 주차장에 어민들의 어구를 넣어놓아 냄새도 심하고 차량 주차에도 불편하니 시에서 국동항 내 주차장 부지 점사용허가를 신청하면 불허가 하도록 요구</li> <li>⇒ 기 주차장 사용 점사용허가 면적 중 3분의1 정도 줄이고, 인근 창고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개선하도록 의견표명</li> </ul> </li> </ul>	완료 (의견표명)
7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월동과 국동 경계사이 공용주차장 조성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동 경남아파트, 시영아파트, 귀인아파트, 라인아파트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하니, 인근 도로에 주차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li> <li>⇒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한 후 주차장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 (관계부서 수용 의견으로 주차장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추진)</li> </ul> </li> </ul>	완료 (의견표명)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8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거주 옆 건물에서 환풍기와 굴뚝 등 불법 시설물을 본인 토지에까지 침범하여 설치하여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니 철거해 줄 수 있도록 요구</li> <li>⇒ 관계부서에서 신청인 옆 건물에 일부 무허가 건축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환풍기, 굴뚝 등은 당사자 간 해결사항으로 기각함.</li> </ul> </li> </ul>	완료 (기각)
9	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부당함과 관련 공직자 처벌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공직자 처벌 요청</li> <li>⇒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고충민원의 이첩)에 따라 여수시장(감사담당관)이 직접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송</li> </ul> </li> </ul>	완료 (이첩)
10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및 누수 보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집 앞 등 주변에 도로개설 및 어울림센터 건축을 하면서 기존 건물 철거,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관 등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건축과정에서 지진에 가까운 진동으로 집 곳곳이 균열되고 거실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니 보수 요구</li> <li>⇒ 현장방문을 통한 누수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고 육안으로 공사로 인한 균열 누수라 확인할 수 없어 기각처리 하였으며,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 환경분쟁조정제도 이용 안내</li> </ul> </li> </ul>	완료 (기각)

□ 이첩·취하 민원 내역

연번	민원제목	처리사항	비고
1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부당함과 관련 공직자 처벌 요구	이첩 (여수시)	

□ 상담완료 민원 내역

연번	민원내용	처리사항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석 의견 문의(수회 방문)	돌산읍, 해양정책과 의견과 동일함을 안내
2	불법 개발행위로 조망권 침해당함	관련자료 구비하여 재상담 안내
3	인근 식당 이용객으로 인한 담배꽂초 투기 불만	일반민원(시민소통담당관) 접수 안내
4	신축 원룸 건축 하자에 대한 도움을 원한다는 대리 민원	관련자료 구비하여 재상담 안내
5	신축 원룸에 대한 건축 하자로 시공업자와 법적 다툼 발생	소송 중인 것으로 접수 불가 안내 (충분한 설명과 보충자료 작성 도움)
6	인근 신축 아파트 발파 공사로 민원인 거주 아파트 균열 발생	일반민원(시민소통담당관) 접수 안내
7	아파트 누수 관련 민사소송 완료됐지만 도움 받을 방법 문의	재판 진행이나 완료 건에 대한 접수 불가 안내
8	신축 아파트 계약자로서 건설사에 대한 준공 지연 이유와 지연에 따른 보상 요구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민원 접수
9	키즈카페 승계 후 영업을 위해 소방완비증명 신청을 하고 영업신고증 발급 받았으나 절차상 순서가 바뀌어 폐업 신고를 하게 됨.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영업손해 보고 있으니 긴급히 영업신고증 재발급 요구	소방완비증명서와 유원시설신고증 모두 발급되어야 영업신고증이 발급됨을 안내 후 상담 해소
10	폐지된 수산진흥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문의	인터넷상 찾는 순서 알려드려 상담 해소
11	○○마을하수처리장 위쪽의 사유지 진입로 개설 원하나 정화조 매설, 학교부지, 어촌계 부지등 진입로 개설에 문제가 있어 문의	사인간에 해결할 일로 직접 개입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마을과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어촌계장과 이장 만남 주선

연번	민원내용	처리사항
12	○○마리나에 공용 와이파이 설치, 배 3대 정도 들어가는 정비소 설치, 차단기 작동 중 시민 진입 등 불편 요소 미리 살펴줄 것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접수된 건으로 시민옴부즈만실에 중복접수 어려우며 또한 해당 과에서 협의 중임을 안내 후 상담 해소
13	경계침범으로 이웃에 의한 주택 철거 요구와 과도한 자료 요구	현장확인 및 무료 법률상담 안내
14	시내버스 기사 불친절 사항 개선요청	옴부즈만 중재로 민원 해소
15	건물 신축을 위한 도로 무단 점유자 조치요청	해당 과에서 강제이행금 부과 후 행정 조치 예정 안내
16	가족 소유 주택이 인접 토지에 물려있어 토지 소유주가 집 철거요청. 집을 새로 신축하고자 하나 120-**-**번지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신축에 어려움 있으니 도로 기능 회복해 줄 것 요청	무료법률상담안내 및 시에 도로 기능 회복요청 안내
17	석창사거리(덕양입구) 육교 4차선 주행속도 표시 수정 요청. 노면에 표시된 주행속도 70km와 전면에 설치된 주행속도 단속기 60km가 불일치하여 관광객 및 시민 불편 증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 후 시정 완료 답변받음
18	마을안길 확장공사로 모친 소유 목조구조물을 임의 철거하여 보상 및 재설치 요구했으나 시에서는 마을 주민이 공동 철거한 사항으로 안내하고 종료됨. 현재 모친은 돌아가시고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니 화장실 설치 요구	마을에서 해결할 사항이나 민원인은 마을에 알리기를 거부 또한, 과거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던 곳으로 후원연계도 어려움. 옴부즈만이 상황 충분히 설명하여 화장실 설치 어려움을 이해함.
19	돌산 ○○ 국도 17호선 공사 시 하수관 매설로 피해 발생하여 해결됐으나 업무처리 소홀한 직원들 엄중한 처리 요청	감사실 접수 안내
20	건축공사 부실시공 확인 및 조치. 5년 전 준공한 건물이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민사소송 진행 중으로 형사고발 하고자 함	형사고발 희망 건으로 변호사와 상담 권유

연번	민원내용	처리사항
21	공무원이 불법건축물이라며 주변에 알린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문의	개인정보로 보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
22	2022년 11월과 12월의 기초연금액이 다르고 현재 아동 지킴이 활동으로 근근이 생활하며 힘들음을 호소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과 면담 실시 후 고충 해소
23	장마철이나 태풍이 불면 오래된 노목이 쓰러져 민원인 소유 경작물에 피해 예상되니 조치 요청	해당 지번 토지의 도면을 함께 보며 문제 여부 확인. 시민소통담당관실로 민원 접수
24	과거 주변 집들은 오수받이공사(하수관로 정비사업)를 다 했으나 민원인 집만 제외됐으니 오수받이 공사를 빨리해 줄 것	시민소통담당관 접수 안내
25	농로개설 토지사용승락 관련 문의	옴부즈만의 상담 후 민원 해소
26	아파트내 주차장 조성(설치)계획 있음. 어떤 절차 필요한지 안내 바람	시민소통담당관 접수
27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불만사항을 토로하며, 조례 및 규칙 개정요구	조례, 규칙 개정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의견을 전달하였음과 동시에 직소민원으로 이송
28	통장 임명 시 입주자 대표 회의에 추천요청 공문도 없이 공고만으로 통장을 임명한 것은 절차상 맞지 않으니 재임명할 것 요구	등과 총무과에 민원 접수된 사항으로 자료 확인 후 절차상 문제 없음 안내
29	○○동 집앞 옹벽 설치 시 사전 거주자와 협의 후 설치 요망	관계부서에 내용 전달하고 민원인 연락처 전달
30	○○동 소재 빈집 3가구 소유자 확인 요청	옴부즈만 상담 후 민원 해소
31	공공근로(승강장 상하차관리) 참여 중 시민 불만으로 민원 접수되어 공공근로하차. 이에 착용하던 조끼는 공무원에게 반납하려 던졌는데 공무원집행방해로 고발되어 벌금까지 받아 억울함	법원판결이 끝난 사안으로 접수 불가 안내

연번	민원내용	처리사항
32	나뭇가지가 도로 비탈면으로 계속 침범하여 매우 위험함. 이에 산림과 담당자가 현장 확인했고 연락 주기로 했으나 연락 없음	산림과에서 민원인에게 안내해 줄 것을 권유
33	금오도 1코스 중간 훼손된 석축복구 및 잡초 제거 요청	관광과, 남면 면사무소 전달
34	점포 운영으로 도로와 인도에도 상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음. 시로부터 불법 도로점용 과태료 오십만 원을 부과받아 너무 과다함	과태료 이의신청 기간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안내
35	○○동 △△모찌 상호 변경 요청.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일본어인 모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한글(찰쌀떡)로 순화사용 건의. 또한 보도 적치물 자제 요구	업체 대표와 통화 후 의견 전달함 여수시민의 간곡한 요청으로 적극 협조하겠음을 답변 받음

## 2 시민옴부즈만 활동

### 가 2022년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근 거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
- 시 기 : 2023. 2.
- 대 상 :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시민
- 방 법 : 공고, 시 홈페이지 게재, 책자 제작(250부) 및 배부

#### 여수시의회 보고(2. 15.)



## 나 2023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 운영시기 : 2023. 5. 31. ~ 8. 30. (매주 수 14:00~16:00)
- 운영방법 : 읍·면·동 방문 상담
- 상담관 : 2명(시민옴부즈만)
- 주요내용 :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고충민원 사후관리 현장 방문 등
- 운영일정

구분	읍·면·동 상담일
5월	31일(돌산읍)
6월	7일(대교동, 국동, 월호동) / 14일(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 21일(여서동, 문수동) / 28일(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7월	5일(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 12일(화양면, 화정면) / 19일(여천동, 주삼동) / 26일(쌍봉동, 시전동)
8월	2일(묘도동, 삼일동) / 9일(울촌면) / 16일(소라면) / 23일(남면) / 30일(삼산면)

### □ 운영결과

총 접수건수	고충민원	현장해결	상담안내(일반민원 이첩)
7건	2건	2건	3건

\* 도로·교통 3건 / 환경 1건 / 기타 3건

### 찾아가는 옴부즈만 현장활동



## 다 타 시·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벤치마킹 방문



광양시(3. 22.)



거제시(9. 12.)



광주 남구(11. 16.)

## 라 시민옴부즈만 활동사항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연구포럼 참석



2월 8일



5월 9일

시민옴부즈만 민원 현장 방문



1월 6일(광무동)



2월 23일(웅천동)



3월 7일(화정면 백야도)



3월 22일(돌산읍)



6월 29일(교동)



7월 12일(교동)



7월 13일(국동)



8월 31일(화정면 추도)

고충민원 관계자 회의



1월 4일(허가과)



1월 31일(산림과)



2월 2일(감사담당관)



2월 6일(중부민원출장소)



5월 11일(하수도과)



6월 15일(섬발전지원과)



6월 21일(건축과)



7월 14일(섬발전지원과)

### 3 시민옴부즈만 홍보

#### 가 여수시 홈페이지



#### 나 배너 및 리플릿 제작·홍보



## 다 언론보도

# BreakNews

## 여수시, 고충민원 해결 선제대응...!읍면동 시민옴부즈만 순회

8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23/05/31 [14:25] [본문듣기](#)



▲ 여수시가 31일부터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전남 여수시가 31일부터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옴부즈만 2명과 공무원 1명 등 3명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들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돌산읍을 시작으로 8월 30일까지 삼산면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상담은 예약제지만 현장에서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시정사항·단순민원 등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6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제3기 김기채 대표옴부즈만은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어겠습니다"라는 구호처럼 시민들을 위한 옴부즈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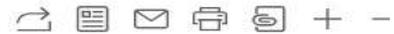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2017년 8월 출범 이후 385건의 민원을 접수해 381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다.



## 여수시, 고충민원 해결 나선다...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8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27개 읍면동 순회

조충재 기자 jea0820@naver.com | 등록 2023.05.31 14:23:04



[ 한국미디어뉴스 조충재 기자 ] 여수시가 31일부터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시민옴부즈만 2명과 공무원 1명 등 3명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들을 예정이다.

31일 돌산읍을 시작으로 8월 30일 삼산면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상담은 예약제지만 현장에서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시정사항·단순민원 등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6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제3기 김기채 대표옴부즈만은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라는 구호처럼 시민들을 위한 옴부즈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2017년 8월 출범 이후 385건의 민원을 접수해 381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다.



# 여수시민 옴부즈만 공개 모집한다

시민의 고충해소 및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옴부즈만 2명 모집

입력 2023.07.06 14:26 조찬현



▲여수시청

여수시가 오는 10일까지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시민 옴부즈만 2명을 공개 모집한다.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위법·부당·소극적 처분)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합리적인 조정을 한다.

또한, 행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개선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번에 모집하는 제4기 시민 옴부즈만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전문성을 수반하는 자리인 만큼 행정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책임자를 위촉할 방침이다.

지원자격은 ▲대학 및 공인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등이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추천위원회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정하며, 시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할 계획이다.

지원서는 여수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민소통담당관실(061-659-3076)로 문의하면 된다.

# 굿모닝투데이

##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 공개 모집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7.06 14:50 | 댓글 0



| 시민 고충해소 권익보호, 불합리한 제도개선



여수시청

여수시는 오는 10일까지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시민 옴부즈만 2명을 공개 모집한다.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위법·부당·소극적 처분)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합리적인 조정을 한다. 또한, 행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개선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번에 모집하는 제4기 시민 옴부즈만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전문성을 수반하는 자리인 만큼 행정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적임자를 위촉할 방침이다. 지원자격은 ▲대학 및 공인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등이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추천위원회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정하며, 시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할 계획이다. 지원서는 여수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민소통담당관실(659-307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



### **III. 주요 처리사례**

**1. 의견표명**

**2. 기각**



## 01 의견표명

### ○○읍 △△마을 노인요양시설 건립 반대

#### 1 민원개요

##### 가. 신청원인

- 요양원 건립 위치가 마을 초입에 있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소음공해(앰블런스 왕래)로 인한 주민 불편 초래 및 전통과 오랜 관습적으로 마을 당제를 모시는 장소와 가까워 마을 공동체의 역사, 문화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 훼손과 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동 \*\*\*길 주거지는 요양원 입구 쪽에 위치하여 사업주가 수용해 줄 것 요구
- 요양원 설립 예정지는 마을의 주 출입구로 굽은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지와 인접해 있어 마을 주민들의 이동 차량, 요양원 환자 가족 차량, 구급 차량 등의 많은 왕래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교행 차량에 의한 주민들의 사고 유발과 마을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생활 쓰레기 발생, 마을 공원의 주차장 화, 생활폐수로 인한 악취 발생 등 주거환경의 악화와 정신적 정서적 고통 및 재산적 피해가 우려된다.

##### 나. 피신청인의 주장

해당 건축 사항은 2022. 11. 4. 건축허가 된 사항으로 건축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다. 향후 사업자와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중재 예정

#### 2 사실관계

##### 가. 건축허가 현황

위 치	여수시 **읍 **리
건 축 주	(주) ****요양원
용 도	노유자시설(요양원) *주차대수:20 대(법정6대) 180㎡/일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1동 건축 연 면적 : 1,669.47㎡/ 대지 : 2,290㎡
건축허가	2022. 11. 4.(미착공)

## 나. 추진사항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22. 05. 30.
  - 다수인 민원접수(요양원 건축허가 반대) ‘22. 06. 08.
  - 건축허가 ‘22. 11. 04.
  - 민원인 방문(허가민원과) ‘22. 12. 28.
- (주민집회예정 통보⇔건축허가 불가함을 충분히 설명)

## 다. 사실관계

- \*\*마을 전체 주민의 요양원 건립에 관한 회의  
2023년 3월 2일 \*\*마을회관 요양원 건립 찬반 회의에서 62명 출석 찬성 2명 반대 60명으로 주민 요양원 건립 반대 의사 확인함.
- 신청인과 사업주 중재  
신청인의 주거지는 요양원 건립 예정지의 진입 입구에 위치하여 환자와 관련 앰블런스 운행과 향후 예상되는 교통·환경 문제로 정서적 불안에 시달려 왔고 요양시설 특성상 사자의 발생 등 혐오 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생활의 어려움 호소와 부동산 지가 하락 등의 피해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요양원 진입로 초입에 있는 신청자의 주거지를 수용(매입)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 사업주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기에 개인적 보상과 매입은 불가하다. 다만, 마을 발전 기금에 관해서는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
- 청정지역으로 전통적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있는 \*\*마을의 기업과의 상생

과 조화를 위한 조정을 3, 4회 상호이해와 화해의 마음으로 상호 역지사지하며 상담 조정을 시도해 보았으나 신청인의 대폭적 양보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이견으로 조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 3 판 단

#### 가.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사회복지사업법」

#### 나. 판단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이해관계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를 가진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해 관계인에는 토지소유자, 토지 사용자, 토지 주변 주민, 토지와 관련된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국토계획법은 이해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례를 통한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후 취소 사례를 살펴보면 교통·환경·소음 문제로 비롯되었던 점에 비추어 노인요양원의 건축은 주민에 대한 환경·교통·소음으로 충분한 대책이 요구된다.
  - 2013년 서울 강남구에 노인요양원의 건축허가가 교통 문제로 취소되었다. 이 요양원은 지하철 2호선 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지만,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교통 혼잡이 우려되었다.
  - 2014년 경기도 용인시에 노인요양원 건축허가가 환경 문제로 취소되었다. 이 요양원은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하천이 오염되어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있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158 판결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요양원 건립 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서울고등법원 2012나205485 판결일 선고는 요양원 건립이 주택가와 인접 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녹지가 조성되지 않을 예정이므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현 노유자시설 예정 부지와 신청인의 주거 주택이 인접되어 있으며 향후 방문자 등에 비추어 기존 주차장으로는 수용할 수 없어 마을 주차장이나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이 필요함.

## 4 결 론

- 요양원 부지는 신청인의 주거지와 담장 하나로 너무 인접해 있고 건축 공사 시 덤프트럭이 수시로 드나들어 차량과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공사소음과 환경 문제가 예상된다.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과 환경 문제에(비산먼지 발생과 소음 등) 관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 할 것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 16조 제2항에 따라 의견표명 함.
- 신청자의 피해 정도가 현시점에 특정되지 않았지만 요양원의 준공 이후 공사과정 중에 신청인이 환경·소음 및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일조권 등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자의 인접 대지에 건물이 신축되므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 수용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마을과 인접한 지역의(이해당사자 포함) 노인 요양원 건축허가에 있어 교통·환경·소음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마을 주민의 의견 청취 등 사전 사업주와 이해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줄 것을 의견 표명 함.
- 신청인의 주거지 이주(수용) 여부에 대하여서는 주)\*\*요양원과 사인간의 권리관계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각하 함.

## 5 처리결과 → 수용

◆ 소관부서 : 허가과

- \*\*읍 \*\*리 \*\*6-1번지 외 4필지 상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교통, 소음, 비산먼지 등의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관리·감독하고자 하며, 인근 마을 주민들과 사업주와의 중재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함.

## ○○ 농어촌도로 확장 관련 편입 토지 조정 요구

### 1 민원개요

#### 가. 신청원인

- \*\*면 농어촌도로(농도 \*\*호선) 확장 실시설계 용역 중 토지주와 협의 없이 신청인 토지를 많이 편입되게 도로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면 \*\*리 \*\*-3번지 신청인 토지와 인접 토지를 반반씩 수용하여 도로개설 요망
  - 농어촌도로 확장 사업 도로구역 결정이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니 조속 결정 요망
- \*\*\* 관계자가 도로 확장 관련 내부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는지와 만일 허위 사실 정보를 누설할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

#### 나. 피신청인 주장

- 도로 노선 관련
  - 도로 노선 결정은 현지 여건, 경제성 및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할 계획임
  - 노선 및 선형 등이 결정되면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선형이 결정되면 조속히 사업 추진하겠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정보를 외부인에게 제공한 사실 없음

### 2 사실관계

#### 가. 설계개요

- 사업명 : \*\*면 농어촌도로(농도\*\*호선) 확장 실시설계용역
- 위치 : 여수시 \*\*면 \*\*리 ~ \*\*리 일원
- 사업규모 : L=1,200m(2차로)

- 용역비 : 164백만원
- 사업기간 : 2022. 12. 15. ~ 2023. 9. 10.

## 나. 추진일정

- 2017. 08. 10.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 2022. 12. 15.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09. 10. : 실시설계용역 완료 예정(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기간연장 될 수 있음)

## 다. 사실관계

-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와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이며, 이중 농도(農道)는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를 말함.
- 확장 예정인 \*\*면 농어촌도로는 농도 \*\*2, \*\*0호선이며 1994. 9.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 2022.12. 도로확장계획을 수립·고시하였음.
- 신청인 소유인 \*\*면 \*\*리 \*\*-3번지(797㎡)는 사유지로서 오래전부터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공용되는 농로로 사용되어 왔음.

# 3 판 단

## 가. 관계 법령

- 「농어촌도로 정비법」

## 나. 판단 내용

- 신청인은 지금까지 신청인 소유 토지만 농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도로를 확장할 경우 인접 토지와 절반씩 편입되도록 도로구역 결정 요구
- (유)\*\*산업 공장부지와 접하는 도로는 약 240m이며, 이 구간 기존도로 확장시 약 8.9억 원이 소요되나, 양측 토지를 절반씩 편입할 경우 17.3~19.2억 원이 소요되어 약 8.4~10.3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현 농로의 옹벽 높이 2.0m, 비탈면 높이 6.4~10.7m, 옹벽에서 건물까지 이격거

리 17~22m 등으로 옹벽을 철거하여 도로확장 할 경우 도로선형 및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

-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현황측량과 현장조사를 마치고 도로 노선결정 검토중에 있으며, 현지여건, 경제성 및 예산상황, 시점부터 종점까지 전체적인 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임.
- 도로확장 관련 내부 정보유출 여부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민원을 피신청인(감사담당관)이 조사 중임.

## 4 결 론

- \*\*면 농어촌도로(농도 \*\*2, \*\*0호선) 확장사업의 현재 진행단계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아직 선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지여건, 경제성 및 예산상황, 전체적인 도로선형과 신청인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을 결정할 것과 민원구간의 도로 폭은 인근 농어촌 도로와 같은 폭(8m)으로 할 것을 의견표명 함.
- 또한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신속한 도로구역 결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일정을 신청인에게 안내해 주실 것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견표명 함.
- 도로확장 관련 내부 정보유출 여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감사담당관)이 조사 중에 있어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각 하함.

## 5 처리결과 → 수용

◆ 소관부서 : 도로과

- 현지여건 및 경제성 등을 종합하여 도로폭(8m)로 추진하겠음.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노선(안)이 결정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세부일정 안내

## ○○마을 하수처리장 일부 사유지 원상회복

### 1 민원개요

#### 가. 신청원인

- \*\*마을 하수 처리장 시설부지로 무단 사용 중인 신청인 소유의 토지 점유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함.

#### 나. 피신청인의 주장

- 공사당시 지적 측량 및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 시설물이 사유지 일부를 (\*\*리 62)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마을하수처리장은 매일 오수 약 75m<sup>3</sup> 처리하는 공공재산으로 현실적으로 해당 시설물의 용벽 철거 및 처리장 이설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이 매입 요청이 있을 시 적극 검토하겠음.

### 2 사실관계

#### 가. \*\*마을 하수처리장 현황

용	도	**마을 소규모 하수시설				
시	설	용	량	75m <sup>3</sup> /일 펌프장 1개소, 관로 2.9km		
위	치	여수시 **면 **리 61-2				
사	유	지	위	치	**리 62	
시	설	가	동	일	시	2010년 11월

#### 나. 추진사항

- 민원 접수 : '20. 10. 12.
- 민원협조요청(\*\*어촌계) : '21. 07. 12.

- ⇒ 어촌계 토지 매각 불가 알림
- 민원 협조 요청(전라남도교육청) : '21. 12. 16.
- ⇒ 조건부 매각 가능

## 다. 사실관계

- 신청인의 소유 토지인 여수시 \*\*면 \*\*리 62번지(전, 면적 3217㎡)와 어촌계 소유의 \*\*마을 하수시설 인근의 토지나 여수교육지원청 소유의 토지와 연결 도로 개설을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어서 신청인의 토지가 공공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배려 민원 해결책의 일환으로 매입을 위한 중계 역할을 요청한바 신청인의 요구 내용을 전라남도 교육청 및 \*\*어촌계에 전달하여 여수교육지원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 학교 운영위원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 민원인의 요구 및 협의내용
  - 민원인의 요구사항: 하수처리장 부지(\*\*리 61-2)에 접한 어촌계 토지(\*\*리 61-1) 일부의 매입
  - 매입목적 : \*\*리 62번지로 향하는 도로개설
  - 협의내용 : 도로개설 후 도로 및 토지는 마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여수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

## 3 판 단

### 가. 관계 법령

- 「헌법」
- 「하수도법」

### 나. 판단 내용

-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당한 주체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 하수도법 제3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공공하수관리청은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출입, 사용이나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그 보상에 대하여는 공공 하수관리청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인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을 이설해주거나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선택으로 민원인과 협의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 4 결론

- 개인 소유의 땅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시설물이 설치되어 관리해 왔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23조 와 하수도법 제3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용. 사용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을 이전시켜 신청인의 사유지를 원상복구 해주거나 신청인의 사유지 점유 면적을 매입해주기를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견표명 함.

## 5 처리결과 → 부분수용

◆ 소관부서 : 하수도과

- 피신청인(여수시장)의 의견표명 수용여부
  - 사유지 원상복구 관련 : **불수용**  
(사용 중인 하수처리장으로 옹벽철거 등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사유지 점유면적 매입 관련 : **수용**  
(점유면적( 75㎡)에 대하여 신청인 매입 요구 시 추진하여 민원 해결에 노력 하겠음.)

## ○○항 내 주차장 부지 추가 점사용 허가 반대

### 1 민원개요

#### 가. 신청원인

- \*\*항 주차장 부지가 특정 단체에 독점적으로 사용 되어왔다. 수년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신청인(\*\*\*\*대응본부)의 계속된 민원으로 (185명의 집단민원 등) 주차장 인근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주차장 부지를 점·사용 승인을 하였다. 여수시는 만료되는 9.26일 이후 점·사용 승인을 철회하고 주차장을 시민에게 돌려달라는 신청.

#### 나. 피신청인의 주장

- \*\*항 배후 부지 이용계획 상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수협을 이용하는 화물차가 이용 중으로 주차 공간은 부족하지 않음.
- \*\*항 내 안강망 그물 적치, 수리 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100m 이상의 장소가 없으며, 어항시설을 갖추어 어민들을 위한 작업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장 부지 일부를 어구 적치, 수선을 위한 장소로 해수청에 \*\*항 이용계획을 변경하였음.
- \*\*\*\*수협의 점·사용 승인에 관한 의견
  - 주차장 부지 일부를 어구 보관 장소 등으로 점·사용허가 하여도 주차장 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 사실관계

#### 가. \*\*\*수협 점·사용 승인 내역

- 신청인 : \*\*\*\*수협협동조합(여수지부)
- 어항위치 : \*\*항(여수시 \*\*동 \*\*-번지 외 5필지)
- 허가기간 : 2022. 9. 27~ 2023. 9. 26. (1년간)

- 허가규모 : 육역 2,99.5㎡
- 목 적 : 어구 보관 및 야적장
- 사 용 료 : 면제(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7조 )

## 나. 추진사항

- \*\*항 내 악취제거 조치 및 관련 민원 : ‘22. 05. 17.  
⇒ 여수시장
- \*\*항 내 주차장 점·사용허가 반대 : ‘22. 05. 09.  
⇒ 여수시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항 내 민원 국유지 점·사용허가 실태조사 요청  
⇒ 여수시 의회 의장 : ‘23. 06. 11.
- 이해관계자 현장(\*\*항 주차장) 면담 및 협의  
⇒ 신청자, \*\*\*수협, 시민옴부즈만 : ‘23. 07. 13.

## 다. 사실관계

- 5여 회 현장 확인 및 안강망 수협 조합원과 관계자 면담을 통하여 3~5여 년 관리청의 점·사용 승인 없이 무단으로 주차장에서 그물 어구 등을 적재, 수리해 왔음.
- \*\*\*\*\*수협의 국동항 내 주차장 부지에 대한 점·사용 승인 요청이 있어 법령과 해수청의 의견회신에 따라 2022. 9. 27~ 2023. 9. 26(1년간) 승인함.
- 신청인과 \*\*\*수협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 상생 의견을 도출함.

# 3 판 단

## 가. 관계 법령

- 「어촌어항법」 제 24조
- 「어촌어항법」 제 16조 및 제35조

## 나. 판단 내용

- 「어촌어항법」 제16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동항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이며, 관리청은 여수시로 어항의 관리, 운영유지는 여수시에서 담당하고 있음.
- \*\*항 배후 부지 이용계획 상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수협을 이용하는 화물차가 증가하고 있어 점차 주차 공간이 부족 할 것으로 예상됨.
- \*\*항 내 안강망 그물 적치나 수선할 수 있는 100m 이상의 장소가 없으며, 어민을 위한 작업공간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수협은 현 주차장 부지의 점·사용 시 주변 악취 어구 적재물을 많은 비용을 들여 정리했으며 신청인과 상호 협의를 통한 소통과 이해가 증진된 점.

## 4 결론

- 「어촌어항법」에 따라 \*\*항은 어민을 위한 시설이며 주차장 부지는 지정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 \*\*항 주차장 부지 여수시 \*\*동 \*\*-1번지 외 5필지 육역 2999.5㎡ 면적의 점·사용 허가를 약1/3을 줄인 육역 1980㎡만 점·사용 허가를 하고 부족한 주차장 면적을 보완하기 위하여 \*\*-1필지 중 적재물 보관 중인 창고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개선할 것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견표명 함.

## 5 처리결과 → 수용

◆ 소관부서 : 섬발전지원과

- 기 주차장 사용 점·사용 허가 면적 중 1/3정도 줄이고, 인근 창고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

## ○동·△동 경계에 공영주차장 설치 요청

### 1 민원개요

#### 가. 신청원인

- \*\*동과 경계인 \*동 \*\*05번지 도로 비탈면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도로 비탈면 높이가 15m로 위험하고 사업비가 과다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음.
-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

#### 나. 피신청인 주장

- \*동 \*\*05번지(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해당되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음.
- 본 지역은 도로 사면 구간으로 사면 일부가 유실되어 돌망태 옹벽으로 보강된 형태로 지반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해당부지 이외에 공영주차장 조성하기에 적합한 부지를 마련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2 사실관계

- \*동 \*\*05번지 도로 일부 구간 차도 및 인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로 경사 11.4%의 급경사 도로로써 주·정차 금지 구역임.
- \*동 \*\*05번지 도로 비탈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압장(4개소)은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임.
- 여수시 공영주차장 확충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임.

### 3 판 단

#### 가.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 :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 주차장법 : 제2조(정의),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5조(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나. 판단 내용

- 신청인이 공영주차장을 설치 요청한 지역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차도 및 인도가 아닌 도로 비탈면에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설치를 요구하는 것임.
- 주차장 설치 요구 지역 앞 도로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로 경사 11.4%의 급경사 도로로 현 도로 노면과 같은 높이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설치가 어려움.
- 왕복 2차로인 본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명절 등에는 도로 양쪽에 주·정차로 인해 마을버스가 통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별도의 노외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지역임.
- \*동 \*\*04-1번지 게이트볼장 진출입 도로 일부를 같이 이용하여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비탈면이 넓은 지역에 주차장 설치 시 약 70대의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으나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해야함으로 미관저해가 우려됨.
- 주차장 설치 시 진출입로에서 먼 거리에 있는 주민 등을 위해 중간 및 종점 부분에 도로와 연결 계단 설치 필요.
- \*동 \*\*05번지 도로 비탈면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가압장 4개소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 시설이며, 아파트 측에서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3개 가압장)을 받았음.

## 4 결론

- 공영주차장 설치 요구 지역은 비탈면이 높으나 폭도 넓어 필요시 주차장 설치  
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옹벽 등 구조물 설치가 수반되어 도시미관 등의 저  
해가 우려됨.
- 그러나 국동과 월호동 경계지역은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으  
므로 우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 주실 것  
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견표명 함.

## 5 처리결과 → 수용

◆ 소관부서 : 주차차량과

- 여수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22. 10. ~ 2023. 3.
  - 조사결과 : 국동 일원의 주차 부족분은 1,239대로 예상되며, 민원인 요청 일  
원은 약 140 여대로 추정됨.
- 해당지역은 공영주차장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중장기계획수립 2023년 7월 말 예정, 중장기계획 반영 후 2024년 조성 예정  
계획임.

##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문화재 보호대책

### 1 민원개요

#### 가. 신청원인

- 5가구 9명이 사는 작은 섬이지만 추도의 돌담은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7년 11월 30일) 낭도, 사도, 추도 일원은 공통 발자국 군집으로 천연기념물 제434호로 지정되어 있다. 주말마다 최고 400여 명의 관광객이 입도하고 있음에도 접안시설이 없어 (소규모 낚시배만 접안가능) 주민 이동권과, 각 가정의 정화조 설치지원, 등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과 외지인에 의한 문화재 반출 및 훼손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달라는 신청

#### 나. 피신청인의 주장과 추진사항

- 여객선 운송지원책 마련으로 이동권 보장
  - 2024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사업 신청 전 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도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며, 장기적으로 여객선이 운항 가능하도록 접안시설 정비 검토 및 여객 선사와 협의 중에 있음. (섬발전지원과)
- 섬 주민 정화조 설치지원 관련
  -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마을을 대상으로 국고 지원을 통해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화정면 추도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마을 공동 정화조 또는 개인 정화조 설치를 통해 오수 처리하여야 함. (하수도과)
- 문화재 외지인 반출 등 보호조치 대책 관련
  - 현재 문화재 지킴이로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사도·추도에 배치되어 있으며, 2024년 예산확보를 통해 추도에 별도로 추가 배치할 계획임.

- 문화재 보호 관련해서는 2022년 수립된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전 정비 추진 중에 있음.
- 무분별한 탐방 방지를 위해 CCTV 추가설치 및 문화재 관리인 동행 탐방 안내
- 문화재 안내판 교체 및 문화재 보호 경고판, 안전난간 설치 등
- 공룡발자국 훼손 대비 현 보존 상태 기록 측량으로 보전 처리 및 복원기록화 사업 추진 (문화유산과)
- 관광객 쉼터 조성 대책 관련
  - 쉼터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이 가능한 해밭이로 대체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시설 정비(공중화장실 칸 조정, 정화조 덮개 정비)와 함께 하반기에 예산확보 후 추진 예정 (화정면 사무소)

## 2 사실관계

### 가. 문화재 개요

- 문화재명 :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
-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434호(2003. 2. 4. 지정)
- 소재지 : 화정면 낭도리 산 115-2번지 등
- 지정구역: 191,452㎡(육지부 24,358㎡, 공유수면 167,094㎡)
- 주요특징
  - 사도, 추도, 낭도, 목도, 적금도 등 백악기 퇴적층에 광범위하게 분포
  - 공룡발자국은 총 3,546점으로 사도 755점, 추도 1,759점, 낭도 962점, 목도 50점, 적금도 20점이 각각 발견됨.
  - 추도마을의 돌담은, 도서지방의 생활사와 주택사의 두 가지 면에서 학술 가치가 높고,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보존 가치가 뛰어나다. 2007년 11월 30일 국가 등록문화재 제367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가 등록문화재로 재지정 되었음.

### 나. 사실관계

□ 섬 주민 이동권 관련

- 주민 등록된 6가구에 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소에 주민들은 사전으로(낚시배 등) 이동하고 있음. 편도에 7~10만 원으로 탑승 인원이 부족할 때는 부담되는 금액임.
- 정기 여객선 운항을 위해서는 선박 정박을 위한 부두 항만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2024부터 예산이 순차적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이동권 관련하여 어려움 호소 중임.

□ 화장실이 없는 모습과 주민의 애환

- 추도 주민의 화장실에는 좌변기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91세의 정 할머니는 40~50m 거리의 섬 유일한 화장실인 공중화장실까지 가야 하는 상황인데 겨울철과 바람 부는(태풍) 날이 불편함.

□ 천연기념물과 국가 등록 문화재 관리와 보전

- 추도의 국가 등록 문화재인 돌담과 특히 추도에 산재 되어 있는 여러 공룡 화석 중 84m 공룡 보행 발자국 화석은 세계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자산이므로 잘 보전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현 상태는 오랜 풍화작용과 산성비, 관광객의 과도한 입도로 인해 하층부가 10여 년 전보다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는 마을 주민들에 증언과 공룡 보행 길로 가는 입구 주상절리 하층 부위가 상층과 다르게 변형되고 탈락되는 현상이 보였음.

### 3 판 단

#### 가. 관계 법령

- 「헌법」 제 34조 제1항
- 「섬발전촉진법」 제 13조
- 「문화재보호법」 제 4조

#### 나. 판단 내용

-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

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섬발전촉진법」 제 13조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

②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박 이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된 이 법령에 따라

□ 열악한 섬 환경의 특수한 상황에서도 공도화 되지 않고 섬을 지켜왔던 9분의 주민들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적 생활정주여건 개선에 미흡함이 있다 판단 된다. 그들의 주민등록이 추도에 있는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추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다 할 것이다.

□ 천연기념물 제434호의 공룡화석지,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돌담길의 독특한 섬 문화의 가치는 우리 지역이 소유한 소중한 자산이기에 먼저 이 가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공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 4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민 이동권 확보, 정화조 설치지원, 문화재 보호조치의 민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 섬발전지원과

- 단기적으로는 도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장기적으로는 여객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접안시설을 정비 검토 및 여객선사와 협의할 것

□ 문화유산과

- 2024년 추도에 문화재 지킴이 1명 배치와 무분별한 탐방과 문화재 훼손 예방을 위한 CCTV 추가설치 및 정비 추진

□ 관광과

- 현 관광과 추도 관리 공용화장실 정화조에(용량: 50톤 FRP 구조로 용량 여유 있음) 주민 화장실 배관 연결 승인하여(돌담 회피하여 우회) 현실적 정주여건 개선 검토(공사비는 각 세대별 주민부담) 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견표명 함.

## 5 처리결과 → 수용 ◊ 소관부서 : 섬발전지원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 (문화유산과) 안내판 정비 완료, 화석산지 주변 CCTV 3개소 분청 실시간 연계 및 2024년 CCTV 추가설치 예정이며, 문화재 보호 및 탐방객 안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 배치 예정
- (섬발전지원과) 소외도서 향로운영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2월 향로 투입 예정, 2024년 방파제 연장 완료 후 접안시설 순차적 정비 예정
- (관광과) 문화재보호법 및 하수도법 관련부서와 협의 후 연결하고, 생활오수만 연결될 수 있도록 우수 분리 시공해야 함.

## 2 기각

### 공익 직접지불금 지불 요청

#### 1 민원개요

##### 가. 신청원인

-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하였으나 도시 거주 및 주업기준 미충족으로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등록이 거부됨
- 신청인은 임업 직불제법에 따라 임야소재지에 주소를 옮겨 산림경영을 계속하고 있으니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 요망

##### 나. 피신청인 주장

- 공익 직접지불금 자격 요건(임산물 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 종사요건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거주요건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 주업기준 : 연간 경영투입비용이 800만 원 이상인 임업인
- 신청인은 종사요건 및 임산물 생산업 주업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등록 거부됨

#### 2 사실관계

##### 가. 경제림 조성사업(2021년)

- 조림지 및 면적 : 여수시 \*\*면 \*\*리 산\*\*\*-18번지, 1.19ha
- 수종 및 본수 : 황칠(2-0용), 3,570본
- 경영투입비용 : 8,418,600원
- 보 조 금 : 6,676,740원

산주부담금 : 1,741,860원(부담금 741,860+건설기계대여 1,000,000)

- 신청 당시 주소 : 여수시 \*\*\*134, \*09동 1205호(\*\*동, \*\*아파트)

## 나. 추진일정

- 2022.06.22. :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2022.07.27. :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 2022.12.22.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
- 2023.01.03. : 신청인 주민등록 이전(여수시 \*\*동→여수시 \*\*면)
- 2023.01.03.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 신청
- 2023.01.05.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 회신(등록거부)

## 3 판 단

### 가. 관계 법령

- 「농업식품 기본법」 제3조 제5호 - 농촌이란 읍·면의 지역과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임업직불제법」 제8조 제2항 - 농업식품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5조 - 농자재·종자·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및 시설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 원 이상인 임업인
-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제4조 - 임산물 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 사업으로 투입된 비용의 경우 자기 부담이 아닌 비용은 제외

### 나. 판단 내용

- 임산물 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지급 요건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나 황칠나무를 2021년 식재하여 아직 판매금액이 없음.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경영투입 비용이 연간 800만 원 이상인 임업인에 대하여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신청인은 보조금을 제외한 연간투입비용이 1,741,860원으로 주업기준 미충족
-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연간 경영투입비용 중 보조 사업으로 투입된 비용의 경우 자기 부담이 아닌 비용은 제외하도록 규정

## 4 결론

- 신청인은 2021년 황칠나무를 식재하여 아직 임산물 판매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면적직불금 지급요건에 부적합하며,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임업인의 경우 연간 경영투입비용이 8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나, 신청인은 보조금을 제외하면 1,741,860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임산물 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준을 미충족하여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등록이 거부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처리 함.

## 지적재조사 후 도로로 변경한 대지의 원상복귀 요청

### 1 민원개요

#### 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사유지인 \*\*읍 \*\*리 \*\*\*\*-4번지(대지) 일부(약35㎡,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가족들 출입 및 농기계 통행을 위하여 포장해 놓았는데, 피신청인은 지적재조사 측량 시 착오로 분할하여 \*\*\*\*-2번지 도로에 합병하였는바 원상복귀 요청

#### 나. 피신청인 주장

- 2021년 지적재조사 측량 후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발송하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받아 여수시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경계결정통지서를 통지하였으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제출된 이의신청에 관해 여수시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
- \*\*리 \*\*\*\*-4번지의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진입로 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로 판단하여 사유지로 경계가 조정되어 경계결정통지서를 통지하였으며,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 제기가 되지 않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적재조사가 완료되어 경계가 확정됨.
- 따라서 \*\*읍 \*\*리 \*\*\*\*-4번지 경계에 대한 조정이 불가함.

### 2 사실관계

#### 가. 지적재조사 사업

- 사업명 :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돌산 신복지구)
- 위치 : 여수시 \*\*읍 \*\*리 \*\*-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1,256필지 / 573,822㎡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

## 나. 추진일정

- 2021. 06. 10. : 사업지구 지정
- 2021. 04.~05. : 지적재조사 측량
- 2022. 04. 21. : 토지 경계결정 통지서 통지
- 2022. 09. 19. :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 2023. 05. 10. : 조정금 납부 및 이의신청 관련 통지

## 다. 사실관계

-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 \*\*지구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어 2021. 6. 10.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22. 4. 21.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 하지 않았으며, 여수시경계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2. 9. 19.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경계가 확정됨.

# 3 판 단

## 가. 관계 법령

- 지적소관청(시장)은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지적재조사법」 제16조)
-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 등은 이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지적재조사법」 제17조)
-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는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경계 확정됨(「지적재조사법」 제18제1항)

## 나. 판단 내용

- 피신청인은 \*\*리 \*\*\*\*-4번지의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이 사건 토지를 콘크리

트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로 판단하여 시유지로 경계를 조정하였음.

- 당초 \*\*리 \*\*\*\*-4번지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는 신청인의 주택 및 농지를 진입하는 토지로의 역할만 했을 뿐 타인의 통행과는 무관한 토지임.
- 피신청인은 2022. 4. 15.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의신청 기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2022. 9. 19.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공고를 하여 경계가 확정됨.
- 행정심판(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제2015-333호,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제2015-57호)
  -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경계가 확정된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경계 조정을 원할 경우, 경계를 다시 설정하거나 경계설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이후에는 토지소유자가 경계 조정을 원할 경우에도 경계를 다시 설정하거나 경계설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재결하였음.

## 4 결 론

- 이 사건 토지의 경계결정은 지적재조사 측량과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여수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보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어 최종 경계결정을 확정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공고를 하여 경계가 확정된 사항으로 기각처리 함.

# 불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 1 민원개요

### 가. 신청원인

- 신청인 옆 건물(\*동 5\*9번지)에서 신청인 건물(\*동 5\*6번지) 대지 안으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피해가 크므로 불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와 행정 처분 요청
  - 1층 : 닥트 선반
  - 4층 : 연통(LNG 등) 및 창구명 등

### 나. 피신청인 주장

- \*동 5\*9번지 1층 일반음식점 주방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증축한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원상 복구 등) 중에 있으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 \*동 5\*9번지 내 연통(LNG 등), 실외기 선반 등의 사유지 침범에 대한 피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통하여 해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2 사실관계

### 가. 위반 건축물 현황

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용도	구조	규모	위반년도	비 고
*동 5*9	서 * * 김 * *	무허가증축	일반음식점 (주방)	조립식패널	* m <sup>2</sup>	2017	1층
*동 5*6	권 * *	무허가증축	창고(비가림)	목조	2.5m <sup>2</sup>	2008	일부철거

- 위반내용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 나. 사실관계

- \*동 5\*9번지 건물은 2017년경 1층 일반음식점(주방)에 조립식 패널 \* m<sup>2</sup>를 무허가 증축하였으며, 연통(다트), 에어컨 실외기 선반, 4층 연통(LNG 등) 등을 설치하였음
- \*동 5\*6번지 건물은 2008년경 목조 5m<sup>2</sup>를 무허가 증축하였으나 일부철거하고 현재 2.5m<sup>2</sup>가 남아있음

### 3 판 단

#### 가. 관계 법령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80조(이행강제금)

#### 나. 판단 내용

- 피신청인은 \*동 5\*9번지 건물 1층 일반음식점(주방)에 조립식 패널 \* m<sup>2</sup>를 무허가 증축한 것을 확인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음
- \*동 5\*6번지 건물은 목조 5m<sup>2</sup>를 무허가 증축하였으나 일부철거하고 현재 2.5m<sup>2</sup>가 철거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연통(다트), 에어컨 실외기 선반, 4층 연통(LNG 등) 등은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 신청인은 대지경계를 기준으로 양측에서 담장을 설치한 겹담이라고 주장하나, 5\*9번지 건물주는 건축 당시에는 담장이 없었으나 5\*6번지에서 식당을 하면서 전 건물주가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5\*9번지 건물주 동의하에 담장을 설치하였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간침범에 대하여는 5\*9번지 건물주는 공간침범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확실한 것은 경계측량을 해야 함을 주장

### 4 결 론

- \*동 5\*9번지, 5\*6번지 건물에 일부 무허가 건축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행정절

차 이행 중에 있으며

- 연통(다트), 에어컨 실외기 선반, 4층 연통(LNG 등) 등의 시설은 건축허가나 신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위 시설물 등이 신청인 소유 대지 공간을 침범하였는지 여부는 건물주간 의견이 상이하므로 경계측량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이해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기각처리함

##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및 누수 보수 요청

### 1 민원개요

#### 가. 신청원인

- 신청인 집 앞 등 주변에 도로개설 및 어울림센터 건축을 하면서 기존 건물 철거, 상하수도·도시가스관 등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건축과정에서 지진에 가까운 진동으로 집 곳곳이 균열되고 거실에 누수가 발생한 것에 대한 보수 요청

#### 나. 피신청인 주장

- 일반적으로 누수가 있는 경우 도배지가 찢어지거나 물 때 등 누수 흔적이 있으나 민원인의 주택은 우천 시 현장 방문하여도 도배지가 말라 있는 등 누수의 흔적이 보이지 않음
- 우천이 계속될 경우 천장 도배지 일부 들뜸 현상이 있으나 민원인의 말에 의하면 우천이 끝나면 들뜸 현상이 없어지며, 이는 습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라고 보기 어려움
- 건물 외벽에 일부 균열이 있으나 공사로 인한 균열인지 건물 노후 등 자연적으로 발생한 균열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2 사실관계

- 도로개설 사업(건물철거 공사 포함)
  - 사업량 : 도로 732m, 주차장 312면, 건축물 철거 100동
  - 공사기간 : 2019. 8. 12. ~ 2021. 5. 20.
  - 시공사 : 중앙기업주
- 도시재생 뉴딜사업
  - 철거공사
    - 사업량 : 건축물 철거 46동

- 사업기간 : 2020. 12. 15. ~ 2022. 2. 17.
- \* 어울림센터 부지 철거 시기 : 2021. 10. 5. 전후
- 시 공 사 : 성오건설(주)
- 건축공사(어울림센터)
  - 사 업 량 : 지상 3층, 2개동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사업기간 : 2021. 12. 17. ~ 2022. 7. 3.
  - 시 공 사 : (주)대상건설
- 신청인(여수시 문수북11길 8-24) 집수리 현황
  - 사 업 량 : 외벽도색, 옥상방수, 대문 및 현관문 교체, 지붕판넬 설치
  - 사업기간 : 2021. 11. ~ 2022. 4.
  - 시 공 사 : (주)센트럴건설
- 신청인 주택은 1983. 4. 27. 옆집과 측면 벽체가 동일벽체로 건축된 주택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5. 7. 10. 재건축한 후 28년이 경과된 벽돌구조의 단독주택(건축면적 54.45㎡)임
- 신청인 주택은 2021. 11. ~ 2022. 4. 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집수리 사업)으로 외벽도색, 옥상방수, 대문·현관문 교체, 지붕판넬 설치 등 집을 수리 한 바 있음

### 3 판 단

#### 가. 관계 법령

-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분쟁조정제도(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 나. 판단 내용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수동 주택단지 도로개설사업 및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장건물 철거, 도로개설, 어울림센터 신축, 상·하수도 등 각종 지하시설물 매설 등 각종 공사 추진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균열 및 누수로 주민생활이 불편하다는 민원 다수 발생
- 신청인 주택은 장마가 끝나갈 즈음 방문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은 거실 천정

등의 도배지가 누수로 들뜬다 하여 확인 결과 도배지가 들떠 있기는 하나 누수 흔적이 없고, 물에 젖어 있거나 젖은 흔적이 없어 누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옥상은 방수를 하고 벽체에 페인트를 도색하여 균열부위와 누수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신청인은 옆집과 동일벽체에서 물이 스며들어 누수가 된다고 주장하나 확인할 수 없음
- 신청인 주택은 문수북11길 8-26과 동일벽체를 사용하는데 벽체노출 부분 드라이비트가 들떠 있으며, 이곳으로 빗물이 유입되어 건물 균열 부분으로 유입된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일부 훼손된 드라이비트 부분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벽체와 드라이비트 사이에 빗물이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것이 건물내부로 스며들어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건축물에 발생한 외벽 균열을 살펴보면 옥상 올라가는 계단 벽체에 일부 균열이 있으나 이 균열이 건축물의 사용연한 및 구조형식을 고려할 때 노후화에 따른 결함 때문인지, 철거공사 진동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우며, 건물 누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 4 결 론

- 신청인 주택은 장마 끝나갈 무렵에 방문 확인하였으며, 건물내부 천정의 도배지가 들떠 있기는 하나 누수의 흔적은 없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집수리 사업)으로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등을 하여 육안으로는 균열 부위가 확인되지 않아 공사로 인한 균열 누수라고 확인 할 수 없어 기각처리 함.
-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림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me.go.kr>)

## **IV. 부 록**

- 1.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 2.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의 “소속기관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사무국”이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2장 옴부즈만 기능·구성 등

**제3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기 관할을 정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2.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3.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5.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옴부즈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옴부즈만이 궐위된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 대표옴부즈만과 부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 ②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옴부즈만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할)** 옴부즈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권익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11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 스스로 제1항 또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옴부즈만(또는 고충민원) 담당국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
2.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국교수협회의 추천 또는 지역 대학의 총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4. 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대상자를 복수 추천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의회 동의)** ① 시장은 읍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읍부즈만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에 위촉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읍부즈만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확정한다.

**제14조(자문기구)** ① 읍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읍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3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등

**제16조(사무국)** ① 시장은 읍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읍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③ 읍부즈만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 또는 채용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사·처우 등과 관련한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읍부즈만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 등에는 ·여수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여 별도의 공인을 각인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옴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부칙(2016. 12. 30.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8. 10.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제3조(의뢰 또는 요청에 의한 조사)**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고충민원, 다수인관련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조사를 위임·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의뢰받은 사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 및 의회에 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과 타 기관의 옴부즈만에게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기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옴부즈만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른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6. 그 밖에 ombudsman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ombudsman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ombudsman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ombudsman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ombudsman은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ombudsman의 기피·회피)** ① 이해당사자가 「여수시 시민ombudsman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ombudsman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ombudsman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ombudsman은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ombudsman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ombudsman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ombudsman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ombudsman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 및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합의의 권고)** 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ombudsman은 합의를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회의는 ombudsman이 주재한다.

③ ombudsman은 제2항에 따른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소속기관등의 관계부서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합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조정회의 참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ombudsman이 이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신청인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진행)** ① 대표ombudsman은 필요한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른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며,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간사의 사무는 파견 공무원이 수행한다.

③ 의안의 제안 설명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처리에 참여한 ombudsman이 한다.

④ ombudsman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한 ombudsman은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⑥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한 ombudsman은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서의 경정)** ① ombudsman은 제14조제6항에 따른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의 처리결과 통보 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1. 관련 법령·제도·시책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의 처리결과 통보 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ombudsman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ombudsman으로부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ombudsman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ombudsman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ombudsman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ombudsman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ombudsman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ombudsman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ombudsman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및 고충민원의 처리·각하·이첩·종결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① ombudsman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ombudsman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ombudsman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1조(감사의 의뢰)** ombudsman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자문기구)**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선정, 위촉,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옴부즈만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요구한 경우 해당 자문위원은 자문회의에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2.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⑥ 자문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자문위원이 자문회의에 참석한 경우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파견을 요청받은 경우 고충민원의 처리에 적합한 공무원 또는 직원을 선발하여 파견한다.

② 시장은 파견 후 복귀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희망부서 전보, 근무평정 등 인사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활동 수당 지원)** ① 옴부즈만의 업무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활동 수당은 5급 공무원(15호봉) 봉급의 50퍼센트 상당 수준으로 하며, 근무 조건 및 수당 지급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에게 제1항에 따른 활동 수당 외에 민원현장 확인·조사 등에 따른 여비를 공무원 여비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조례 제18조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ombudsman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ombudsman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시장 또는 그 소속 기관등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4. 그 밖에 ombudsman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기록의 관리)** ① ombudsman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ombudsman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7. 4. 7.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10. 규칙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9675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3층 시민옴부즈만실  
Tel. 061)659-3075~3078  
Fax. 061)659-5863